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신분 보장 구체화 및 의무·징계 신설〉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87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원 신분 보장 구체화	3
2. 위원 의무 · 징계 신설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 서미화 · 박홍배 · 최혁진 · 박선원 · 윤종오
오세희 · 박성준 · 박정현 · 신장식 · 김 윤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 의안번호 : 1188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함.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

을 저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됨.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어떤 최소한의 의무 준수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나.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의2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받게 될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원 신분 보장 구체화

개정안은 ① 인권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면직되도록 하고, ②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u> ----- <u>. -----제3호 및 제4호의-----</u> ----- ----- 1.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 2. <u>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차별 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 3. <u>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u>

현행	개정안
<신설>	4.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표-2] 현행법 및 개정안상 인권위원 신분 보장 내용

현행법	개정안
[당연 면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당연 면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u>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차별 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퇴직]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퇴직]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u>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u>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¹⁾는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과 운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되, 인권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²⁾는 인권위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권위원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를 겸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징계, 면직 등)는 마련하고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서도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과 종사할 수 없는 업무를 정무직공무원인 상임위원에 비하여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가.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 나.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 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 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② 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있지 않음.

한편,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다양성·다원성이 확보되고 인권에 관한 전문성·감수성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인권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전문성 및 감수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는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두텁게 보장받고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면직되도록 하고,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전문성·감수성을 갖춘 인권위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위원의 직무 전념성으로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여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경우’ 당연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권옹호 업무방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⁴⁾에 규정된 행정형벌로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함.

그런데,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및 제45조⁵⁾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는 국가인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偽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

권위원회가 행하는 구제조치 또는 징계 등의 권고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그 자체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 면직 사유로 규정할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다른 요건으로 변경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겸직금지 위반 시 당연 면직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관과의 균형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⁶⁾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당연 면직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반면, ②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 설치 근거 법률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면서도 겸직금지 위반을 당연 면직 사유로 명시하지는 아니하고 각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연 면직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⁷⁾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6)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결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결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결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 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울러, 개정안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당연 면직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둔 취지는 어떠한 경우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설정하기 곤란하여 주관적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⁸⁾

겸직금지 위반의 경우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비교적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현행법상 절차적 요건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규정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⁹⁾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83

9)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면직 또는 해촉되나, 위원이 겸직근무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 절차 없이 면직 또는 해촉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셋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인권위원 신분 보장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⁰⁾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10) 인권위원 신분 보장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01	신장식의원	인권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퇴직

2. 위원 의무 및 징계 신설

개정안은 ① 인권위원회에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와 인권 보호·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 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인권위원회는 징계하되 그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보수 2분의 1 감액)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 태만·품위손상행위 등 이 법의 목적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한다.
<신 설>	제11조의3(징계의 종류) 제11조의2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겸직금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등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부담하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령에 따라 징계할 수 없음.¹¹⁾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겸직금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은 지나,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할 수 없음.

1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대상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직접 명시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와 징계 종류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의무 사항(징계 사유)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사항으로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 수행, ② 직무 태만·품위손상행위 등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와 징계 사유 일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¹²⁾

인권위원의 의무 사항(징계 사유)은 인권위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 신분 관계,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1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의 의무 사항(징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안으로 보임.

둘째,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 인권위원이 성실·공정하지 못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향상 업무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① 현재 정무직공무원을 징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무직공무원이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선거로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정 정도 정치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라는 점, ② 정무직공무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만 징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른 정무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비록 비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신분상 차이가 있는 점, 행정법상 징계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하여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 국가인

권위원회와 비슷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징계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징계 종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징계 종류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¹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2분의 1 감액)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법」상 징계 종류나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¹⁴⁾

-
- 13) ◦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강등: 1계급 아래로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 종사 금지(보수 전액 감액)
◦ 정직(1~3개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종사 금지(보수 전액 감액)
◦ 감봉(1~3개월): 보수의 1/3 감액
◦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

14)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음.

다만, 국회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 조직으로서 구성 원리·방식, 구성원의 신분·지위, 회의 운영 방식, 기능·권한 등이 임명직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공개된 본회의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경고받거나 사과함으로써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경우 국회의원의 권한인 발언권(질의권·질문권·토론권)·표결권의 행사 등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이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제한함으로써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국회의원과 동일한 징계 종류를 인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그 징계로서의 의미·효력에 다소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⁵⁾

넷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1조의2제2항은 인권위원 징계를 위원회 규칙에 위

15) 참고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출석정지가 회의 출석을 제한하는 의미라면 그 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비상임위원은 상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전원위원회·소위원회 회의 시에만 출석하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 참석수당만 받고 있어, 출석정지로 회의 출석이 제한되면 회의 참석수당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됨.

임하고 있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¹⁶⁾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1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